

2019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주식회사 우미대한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 : 2019. 12. 24. 15:00

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(삼성동, 아셈타워) 본사회의실

주주총수	:	1명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수	:	60,000주
출석 주주 수	:	1명
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	:	60,000주

의장인 사내이사 박영희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제1호 의안 :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의 건

의장은 회사가 대한토지신탁(주)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설명하고,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, 교부 및 그 조건에 따라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 이에 주주는 계약서의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하다.

제2호 의안 :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의 건

의장은 회사가 엔에이치투자증권(주)와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설명하고, 위 자산보관위탁계약의 체결, 교부 및 그 조건에 따라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 이에 주주는 계약서의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하다.

의장인 사내이사 박영희는 아래의 사항을 보고하다.

보고사항 1 : 일반사무위탁계약 체결의 건

의장은 2019년 12월 23일 이사회에서 (주)국민은행과 일반사무위탁계약 체결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보고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(종료시간 15시 30분)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
전원이 아래에 기명·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19. 12. 24.

주식회사 우미대한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/대표자 사내이사 박 영 희



2019년 12월 24일

임시주주총회 자료



주식회사 우미대한제 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주)우미대한제 28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019 년 12 월 24 일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

◇ 일 시 : 2019 년 12 월 24 일 (화) 15 시 00 분

◇ 장 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 층 회의실

◇ 의 안

- 제 1 호 의안 :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의 건

- 제 2 호 의안 :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의 건

◇ 보고사항

- 보고사항 1 : 일반사무위탁계약 체결의 건 보고

제1호 의안

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의 건

관련 근거

정관 제 25 조 (주주총회 결의사항) 1 항

8.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

계약 주요내용

1. 수임인 :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

2. 보수

- 유상증자완료일부터 청산등기일까지 매 분기 금 36,000,000 원(부가세 별도)을 해당 분기의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

3. 업무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청산등기일까지

기타사항

자산관리수수료 예산 : 1,608 백만원 (VAT 별도)

별첨 1. 자산관리위탁계약서(안) 참조

제2호 의안

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의 건

□ 관련 근거

○ 정관 제 25 조 (주주총회 결의사항) 1 항

8.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

□ 계약 주요내용

1. 수임인 :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

2. 보수

지급기간	보수책정(VAT 별도)	비 고
착공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	금 25,000,000 원/년	분기별 금 6,250,000 원

3. 업무기간 : 자산보관위탁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청산종결 등기일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

별첨 2. 자산보관위탁계약서(안) 참조

보고사항 1

일반사무위탁계약 체결 예정 보고

□ 계약 주요내용

가. 계약 명 : 일반사무위탁계약

나. 수탁사 : (주)국민은행

다. 수수료 : 금 56,000,000원/년 (반기별 지급)

라. 용역범위 : 가상계좌 발급, 가상계좌 입금자금의 입금, 입금명세 전송 등

마. 계약기간 : 일반사무위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당사의 청산종결 등기일 또는 일반사무위탁계약에서 정한 해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별첨 3. 일반사무위탁계약서(안) 참조

